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406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김성원·김정재·김희곤

노용호 • 박대수 • 박덕흠

정찬민 · 조명희 · 최영희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 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법률 제 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농촌 청년 • 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촌여성"을 각 "농촌 청년 • 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	제37조(농촌 청년ㆍ여성의 농촌융
<u>업 지원)</u>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u> 복합산업 지원)</u>
는 <u>농촌여성</u> 의 농촌융복합산업	<u>농촌 청년·여성</u>
참여를 촉진하고 <u>농촌여성</u> 의 경	<u>농촌 청년·여성</u>
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u>농촌</u>	<u>농촌 청년·</u>
<u>여성</u> 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u> 여성</u>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